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사용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가칭) 가동 사전 안내

1. 우리 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과 관련한 협조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귀 기관 및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는 마약류 과다·중복처방 등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환자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내역을 의사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9.12.3. 개정, 2020.6.4. 시행]

제11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통합정보 및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중략)

3.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약내역(일자, 약품정보, 수량을 말한다)을 요청(전자적 방법을 통한 요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이 경우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환자에게 열람요청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우리 처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환자의 마약류 투약(조제)내역을 의사가 진료 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서비스(가칭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를 구축하였으며, 2020년 2월 3일부터 개별 의사 및 치과의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환자 투약(조제)내역 제공은 법률 시행에 맞추어 2020년 6월 4일부터 가동예정

4. 이에 따라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관할 의료기관 등에 동 정보망 가동 사전 안내를 전달하여 주시고, 각 유관 단체에서는 소속 의사 또는 치과의사 회원에게 동 내용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사용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가동 사전 안내문.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보건의료정책과장), 부산광역시(보건위생과장), 인천광역시(보건의료정책과장), 대구광역시(보건건강과장), 광주광역시(건강정책과장), 대전광역시(위생안전과장), 울산광역시(식품의약품안전과장), 경기도지사(보건의료정책과장), 강원도지사(식품의약품안전과장), 충청북도지사(식품의약품안전과장), 충청남도지사(보건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보건의료과장), 전라남도지사(식품의약품안전과장), 경상북도지사(식품의약품안전과장), 경상남도지사(식품의약품안전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건강위생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주무관 **주민진** 사무관 **김익상** 마약관리과장 **최승진** 전결 2020. 1. 17.

협조자

시행 마약관리과-278 (2020. 1. 17.)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 mfds.go.kr

전화번호 043-719-2899 팩스번호 043-719-2890 / redjoo79@korea.kr / 대국민 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